

2025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I. 결산현황

1. 세입결산

- 예산현액 : 25만 2천원
- 징수결정액 : 1억 1천 9백 72만 9천원
- 실제수납액 : 1천 2백 62만 9천원
- 정리보류액 : 0천원
- 미수납액 : 1억 7백 10만원
-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5,011.5%(전년도는 3,068.5%)임.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10.5%(전년도는 20.6%)임.

〈 2025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

(단위:천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결손액(D)		미수납액 (E)=(B)-(C) -(D)	예산수납률 (C/A)	징수율 (C/B)
				정리 보류	시효 완성			
합 계	252	119,729	12,629			107,100	5011.5	10.5
200 세외수입	252	119,729	12,629			107,100	5011.5	10.5
200 경상직세외수입	28	480	480				1714.3	100
200 암사직세외수입	224	12,096	12,096				5400.0	100
240 재난연도수입		107,153	53			107,100		0.0

※ 결손액 = 정리보류 + 시효완성, 미수납액은 다음연도 이월액

2. 세출결산

- 당초예산 : 12억 1천 2백 3만 7천원
- 예산증감 : 0천원
- 예산현액 : 12억 1천 2백 3만 7천원
- 지출액 : 10억 3백 94만 8천원
- 이월액 : 0천원
- 집행잔액 : 2억 8백 8만 9천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17.2%(전년도 6.8%)가 발생
- (사유별 금액) 지출잔액으로 집행잔액(2억 8백 94만 9천원)이 발생하였으며, 불용률 30% 이상 사업은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9천 901만 9천원, 국제 옴부즈만과의 교류협력 활성화 672만 8천원, 국내여비 2천 157만 2천원, 청원사항 처리 410만 1천원임.

〈 2025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사업별 세출결산 총괄 〉

(단위:천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률 (%)
총 예산		1,212,037	1,003,948		208,089	17.2
사업예산계		1,024,528	838,973		185,555	18.1
	시민 권익보호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	540,788	502,544		38,244	7.1
	고충민원 및 청원의 적극적 해결	136,931	114,185		22,746	16.6
	고충민원 조사 처리	39,960	38,317		1,643	4.1
	청원사항의 처리	13,275	9,174		4,101	30.9
	현장민원 점검 및 평가	83,696	66,694		17,002	20.3
	시민참여 활성화	248,589	244,227		4,362	1.8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34,500	34,200		300	0.9
	공공사업 감시평가	170,700	168,007		2,693	1.6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누리집 운영	43,389	42,020		1,369	3.2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률 (%)
		위원회 직무역량 및 위상 강화	155,268	144,131		11,137	7.2
		위원회 직무 역량강화 및 홍보확대	137,718	134,395		3,323	2.4
		국제 옴부즈만과의 교류협력 활성화	17,550	9,737		7,813	44.5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483,740	336,428		147,312	30.5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이식 확산	483,740	336,428		147,312	30.5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27,100	19,220		7,880	29.1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29,940	22,092		7,848	26.2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112,600	13,581		99,019	87.9
		인권정책 홍보 강화	19,900	19,870		30	0.2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97,200	69,200		28,000	28.8
		인권 현장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44,200	40,391		3,809	8.6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136,200	136,200		-	0.0
		인권지킴이단 운영	5,000	4,800		200	4.0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11,600	11,074		526	4.5
일 반 예 산 계			187,509	164,976		22,533	12.0
기 본 경 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187,509	164,976		22,533	12.0

가. 예산 이용 : 해당 없음.

나. 예산 전용

- '23년 아시아옴부즈만협회 가입비(US\$ 250) 및 연회비(US\$ 1,000)가 추후 납부 협의 등으로 미납되어 회원자격 유지 및 국제활동 지속을 위해 '25년에 일괄 납부가 필요하여 '사무관리비' 일부를 '국제부담금'으로
2백만원

총 1건, 2백만원을 전용하였음.

다. 예산 이체 : 해당 없음.

라. 예산의 변경사용 : 해당 없음.

마. 예비비 사용 : 해당 없음.

사. 국고보조금 집행 : 해당 없음.

3. 기금결산 : 해당 없음.

4. 채권현재액 : 해당 없음.

5. 채무결산 : 해당 없음.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해당 없음.

7. 물품 증감 및 현재액

2025년도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관리 정수물품은

- 관리전환 등 0천원
- 매각·폐기 등 0천원
- 당해연도말 1천 2백 82만 8천원
- 총 수량 10개, 현재액은 1천 2백 82만 8천원임.

〈 2025회계연도 정수물품증감 및 현재액 〉

(단위:수량-개, 금액-천원)

[illegible]

II. 검토의견

1. 세입결산

가. 과학적인 세입추계 필요

- 2025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과 현액은 25만 2천원이나, 1억 1,972만 9천원 징수 결정하고 1,262만 9천원이 수납되었고, 1억 71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5,011.5%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은 10.5%로, 세입징수 실적이 전년도(20.6%) 대비 49.1% 감소한 수준으로, 이는 “지난연도수입” 중 ‘부정이익환수금’ 1억 710만원 미수납에 따른 것임.

〈 2025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결손액(D)		미수납액 (E)= (B)-(C)-(D)	예산 수납률 (C/A)	징수율 (C/B)
				정리 보류	시효 완성			
합 계	252	119,729	12,629	-	-	107,100	5,011.5	10.5
세 외 수 입	252	119,729	12,629	-	-	107,100	5,011.5	10.5
경 상 적 세 외 수 입	28	479	479	-	-	-	1,714.3	100.0
이 자 수 입	28	479	479	-	-	-	1,714.3	100.0
기 타 이 자 수 입	28	479	479	-	-	-	1,714.3	100.0
임 시 적 세 외 수 입	224	11,921	11,921	-	-	-	5400.0	100.0
보 조 금 반 환 수 입	224	11,921	11,921	-	-	-	5400.0	100.0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	11,921	11,921	-	-	-	0.0	100.0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24	-	-	-	-	-	0.0	0.0
기 타 수 입	-	174	174	-	-	-	0.0	100.0
그 외 수 입	-	174	174	-	-	-	0.0	100.0
지 난 연 도 수 입	-	107,153	53	-	-	107,100		0.0

- 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현액 대비 징수액(실제수납액) 중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그외수입’, ‘지난연도수입’은 당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징수결정하여 세입 조치하였고,
- ‘기타이자수입’은 예산현액(2만 8천원)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1,714.3% (47만 9천원)로 실제수납액이 과다하게 차이나고 있으며,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은 예산현액은 22만 4천원이나 실제 징수결정액은 0원으로, 세입예산 편성시 산출근거가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2025회계연도 세입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 과다한 차이 발생 내역 〉

(단위 : 원)

예산과목	예산현액(A)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B)	과부족액(B-A)	비율
기타이자수입	28,000	479,460	479,460	20,380	1,714.3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0	11,921,800	11,921,800	11,921,800	순증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24,000	-	-	△224,000	-
그외수입	0	174,390	174,390	174,390	순증
지난년도수입	0	107,153,110	53,110	0	-

▶ 과부족 상세 사유

- 기타이자수입 :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사업 보조금 이자액 예상치보다 과소 발생 및 자치구별 ‘내 지역 지킴이’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 전액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 미편성
 -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 자치구별 ‘내 지역 지킴이’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 전액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 미편성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예상치보다 과소 발생
 - 그외수입 : 시민참여옴부즈만 수당 오지급으로 인한 반납금 및 2024년 관내 출장여비 착오 지급으로 인한 반납금
 - 지난년도수입 : 지난연도 체납(미수납) 발생, “2021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부정수급”(부정이익환수금 : 17,000천원, 제재부가금 : 85,000천원, 가산금 : 5,100천원) 체납액 징수를 위해 법인 재산 조회 결과 무재산 법인으로 체납 징수 전문부서인 38세금징수과에 체납을 의뢰(‘25.3.10.)
-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은 자치구에 교부한 시비보조금의 정산에 따른 반환금 (이자 포함)을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계상하는 예산과목으로, 전년도(2024회계연도)

에 “현장민원 내지역지킴이 운영” 사업 시비보조금 중 미집행한 1,192만원을 징수결정 후 수납했음.

※ “현장민원 내지역지킴이 운영” 사업은 25개 자치구 내 지역 지킴이 물품(조끼, 플래시 등)과 위촉장 등 인쇄비를 위한 것임.

- 자치구 등에 대한 시비보조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특히, 일부 자치구의 경우 교부된 보조금 전액을 미사용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있어, 자치구와 협의 없는 일방적 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보조금 편성 전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불필요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25회계연도 ‘보조금 전액 반환 자치구’ 현황 〉

(단위 : 원)

보조사업명	사업기관 (자치구)	교부액	징수결정액	반환액
내지역지킴이 보조금	강남구청	7,481,000	7,481,000	7,481,000
내지역지킴이 보조금	강동구청	2,830,000	2,830,000	2,830,000

나. ‘지난연도 수입’ 중 ‘부정이익환수금’ 체납처분 의뢰

- 2024회계연도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중 ‘부정이익환수금’은 전액(1억 7백 10만원), ‘기타이자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중 미수납액은 다음연도 (2025회계연도의 지난연도 수입)로 이월처리 했음.

〈 2024회계연도 ‘미수납액’ 2025회계연도 ‘지난연도수입’ 현황 〉

(단위 : 원)

예산과목	예산현액(A)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B)	미수납액
합계	907,000	108,845,640	1,692,530	107,153,110
기타이자수입	32,000	1,743,780	1,692,530	51,250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875,000	1,860	0	1,860
부정이익환수금	0	107,100,000	0	107,100,000

- 2024회계연도에서 이월한 ‘지난연도수입’ 중 ‘기타이자수입’, ‘자체보조금 등반환수입’은 수납완료하였으나, ‘부정이익환수금’(1억 7백 10만원) 전액은 미수납하고, 38세금징수과에 체납을 의뢰했음(2025.3.10.).
- 해당 ‘부정이익환수금(1억 710만원)’은 2023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민간 보조사업 자체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 보조사업 부실 수행 및 거짓 신청·부정한 방법을 통한 보조금 수령 정황이 발견되어, ‘2024년 보조금 교부 결정 전부 취소’에 따른 보조금 전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처분 절차를 진행해 오던 사안이었으나, 체납해소를 위해 38세금징수과에 의뢰한 것은 의의가 있다고 하겠으나,
- 다만, 당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대상 선정과정에서 거짓 신청 등을 걸러내지 못한 인권담당관의 관리 미흡에 대한 책임 및 38세금징수과에 체납 의뢰 전 까지 징수 노력 여부에 대한 점검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여부에 대한 점검도 요망된다고 하겠음.

〈 ‘부정이익환수금’ 발생 개요 및 현황 〉

단체명	부정이익 환수금		미수납액
사단법인 한국진로직업개발원	보조금 전액 환수액 : 17,000,000원	총 107,100,000원	107,100,000원
	제재부가금 : 85,000,000원(부과율 500%)		
	가산금 : 5,100,000원		

- '21년 (사)한국진로직업개발원은 '2021년 인권 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돌봄 종사자 간의 권리옹호와 인식개선 프로젝트' 사업 운영을 명목으로 **보조금 17,000,000원을 교부**받음.
- '23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민간보조사업 자체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 보조사업 부실수행 및 거짓 신청·부정한 방법을 통한 보조금 수령 정황이 발견되어, '24년 보조금 교부 결정 전부 취소에 따른 보조금 전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 처분 절차 진행
- 현재 전액 체납(미수납) 상태이며, 38세금징수과에서 체납 인수
- 근거 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1조 및 제35조

※ 출처 : 2024회계연도 결산안 검토보고서 재인용.

- 종합적으로, 위원회는 최근 3년간 세입예산 편성 없는 징수결정과 수납이 반복 발생하고 있으며,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 및 편성은 전체 세입·세출 규모의 합리적 판단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해 중요한 사항이므로, 위원회는 향후 세입예산 편성시 “예산총계주의(「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규모에 관계 없이 모든 세입은 세입예산에 편성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세입예산 편성 없는 수납 내역 〉

(단위 : 원)

회계연도	예산과목	예산액(A)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B)	미수납액
2025	기 타 이 자 수 입	28,000	479,460	479,460	0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0	11,921,800	11,921,800	0
	자 체 보 조 금 등 반 환 수 입	224,000	0	0	0
	그 외 수 입	0	174,390	174,390	0
	지 난 년 도 수 입	0	107,153,110	53,110	0
2024	기 타 이 자 수 입	32,000	1,743,780	1,692,530	51,250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0	25,725,230	25,725,230	0
	자 체 보 조 금 등 반 환 수 입	875,000	1,860	0	1,860
	그 외 수 입	0	413,570	413,570	0
	지 난 년 도 수 입	0	0	0	0
	부 정 이 익 환 수 금	0	107,100,000	0	107,100,000
2023	위 탁 비 반 환 수 입	-	948,660	948,660	-
	기 타 이 자 수 입	-	42,050	42,050	-
2022	그 외 수 입	-	80,500	80,500	-

2. 세출결산

- 2025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 12억 1천 2백만원 중 10억 3백만원을 집행하여, 불용률은 17.2%(불용액 2억 8백만원)로 전년(6.8%) 대비 10.4% 증가하였으며, 이는 사업관리와 예산집행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대책 마련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부터 집행 과정 전반에 문제가 있음을 방증하는 것은 아닌지 전면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25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사업별 세출결산 총괄 〉

(단위:천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률 (%)
총 예 산		1,212,037	1,003,948		208,089	17.2
사 업 예 산 계		1,024,528	838,973		185,555	18.1
	시민 권익보호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	540,788	502,544		38,244	7.1
	고충민원 및 청원의 적극적 해결	136,931	114,185		22,746	16.6
	고충민원 조사 처리	39,960	38,317		1,643	4.1
	청원사항의 처리	13,275	9,174		4,101	30.9
	현장민원 점검 및 평가	83,696	66,694		17,002	20.3
	시민참여 활성화	248,589	244,227		4,362	1.8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34,500	34,200		300	0.9
	공공사업 감시평가	170,700	168,007		2,693	1.6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누리집 운영	43,389	42,020		1,369	3.2
	위원회 직무역량 및 위상 강화	155,268	144,131		11,137	7.2
	위원회 직무 역량강화 및 홍보확대	137,718	134,395		3,323	2.4
	국제 옴부즈만과의 교류협력 활성화	17,550	9,737		7,813	44.5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483,740	336,428		147,312	30.5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률 (%)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익식 확산	483,740	336,428		147,312	30.5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27,100	19,220		7,880	29.1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29,940	22,092		7,848	26.2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112,600	13,581		99,019	87.9
		인권정책 홍보 강화	19,900	19,870		30	0.2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97,200	69,200		28,000	28.8
		인권 현장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44,200	40,391		3,809	8.6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136,200	136,200		-	0.0
		인권지킴이단 운영	5,000	4,800		200	4.0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11,600	11,074		526	4.5
일 반 예 산 계			187,509	164,976		22,533	12.0
기 본 경 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187,509	164,976		22,533	12.0

가. 예산의 전용

○ 위원회의 2025회계연도 예산 전용 1건, 2백만원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5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전용’ 현황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전용일			
국제 옴부즈만 의 교류협력 활성화	사무관리비	5,500	2,000		2025.12.09.	3,500	2,514	985 (28.2%)
	국제부담금	2,050		2,000	2025.12.09.	4,050	3,949	100 (2.5%)

- 2023년 아시아옴부즈만협회 가입시 가입비 및 연회비를 추후 납부하기로 협의 하였으나, 장기 미납에 따른 회원자격 유지 및 국제활동 지속을 위해 2025년에 일괄 납부가 필요하여 “국제 옴부즈만과의 교류협력 활성화” 사업 “사무관리비”에서 2백만원을 “국제부담금”으로 전용하였음.¹⁾

※ 전용금액 산출근거 : 금2,000,000원(금이백만원) ※ 환율 등 고려

- 산출내역: [US\$ 250(가입비) + US\$ 1,000(2023년 연회비) + US\$ 40(해외 중개은행수수료 US\$ 20 × 2건)] × 1,496.84원(2025. 11. 28. 기준) = 1,930,923원

※ 아시아옴부즈만 협회(AOA : Asian Ombudsman Association) 개요 및 활동 내용

- 설립연도: 1996년
- 설립목적
 - 옴부즈만 개념의 확산 및 아시아지역에서의 발전 도모
 - 아시아 옴부즈만의 정보·경험 교환 및 발전 도모
- 사무국 소재지 / 사용언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 영어
- 회원구성: 47개 회원(26개국 47개 기관) ※ 국내: 국민권익위원회(1996), 강원도 도민고충 처리위원회(2015), 시흥시(2020), 울산광역시(2021),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023)
- 회의체: 집행부회의, 정기 이사회(연 1회), 정기 총회(2년 1회)
- 회원 가입 경과
 - AOA 회원 가입 신청서 제출 (2023. 8.)
 - 정회원 가입 승인 (2023. 9. 11./ AOA 총회 의결)
 - AOA 정회원 가입 승인 통보 (2023. 9. 16.)
- 주요 활동
 - 제18차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총회 및 국제 워크숍 참석
 - (기간/장소) '25. 9. 8.(월)~9. 12.(금) / 중국 장쑤성 난징시
 - (주요내용) 총회, 국제 워크숍, 문화행사 등
 - (주 제) 국민의 삶을 위한 효과적인 옴부즈만 제도(서울시 사례 발표)

- 국제부담금은 2025회계연도 예산편성시 예측가능한 사항이나 이를 미 편성한 것은 아시아옴부즈만 협회와 관계 유지 및 연락체계 구축이 목적이 아닌 당기적 회의 참석 등 보여주기식 사업추진의 대표적인 사례는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1) 예산집행에 있어서 “전용”이란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지방재정법」 제49조).

나. 예산불용 과다 사업 검토

- 2025회계연도 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예산현액 12억 1천 2백만원 중 10억 3백만원을 집행하여, 불용률은 17.2%(불용액 2억 8백만원)로 전년 (6.8%) 대비 10.4% 증가하였고, 작년 대비 증가율은 152.6% 증가함.

〈 2025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사업별 세출결산 총괄 〉

(단위:천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률 (%)
총 예 산		1,212,037	1,003,948		208,089	17.2
사 업 예 산 계		1,024,528	838,973		185,555	18.1
	시민 권익보호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	540,788	502,544		38,244	7.1
	고충민원 및 청원의 적극적 해결	136,931	114,185		22,746	16.6
	시민참여 활성화	248,589	244,227		4,362	1.8
	위원회 직무역량 및 위상 강화	155,268	144,131		11,137	7.2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483,740	336,428		147,312	30.5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익식 확산	483,740	336,428		147,312	30.5
일 반 예 산 계		187,509	164,976		22,533	12.0
기 본 경 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187,509	164,976		22,533	12.0

- 20% 이상 불용은 “청원사항의 처리” 중 ‘사무관리비’는 30.9%(410만원), “현장민원 점검 및 평가”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는 28.3%(1천 7백만원), “국제 옴부즈만과의 교류협력 활성화” 중 ‘사무관리비’는 28.2%(98만원), ‘국외업무 여비’는 67.3%(672만원),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는 67.6%(81만원), ‘국내여

비'는 61.6%(2천 157만원),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중 ‘사무관리비’는 29.1%(787만원),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중 ‘사무관리비’는 26.2%(784만원),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중 ‘사무관리비’는 87.9%(9천 9백만원),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중 ‘사무관리비’ 28.8%(2천 8백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 20% 이상 불용률 발생 현황 및 불용 사유 〉

(단위 : 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불 용 사 유
청원사항의 처리	사무관리비	13,275	9,174	4,101	30.9%	전년대비 청원접수건수 감소로 인한 청원심의 회 개최 횟수 감소 -청원처리건수 : (25년) 99건, (24년)154건 -청원개최횟수 : (25년) 21회, (24년)28회
현장민원 점검 및 평가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60,000	42,998	17,000	28.3%	보조금 매칭사업(50:50)으로 자치구별 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 집행잔액 발생
국제 옴부즈만과의 교류협력 활성화	사무관리비	5,500	2,514	985	28.2%	3기 위원장 임기 만료(2025.5.25.)도래, 국정감사 현안업무 처리 등의 사유로 공무국외여행 심사결과 부결(2회)됨에 따라 제4기 위원장 국외출장 1회만 추진하여 통역비 등 미지출
	국외업무 여비	10,000	3,272	6,727	67.3%	3기 위원장 임기 만료(2025.5.25.)도래, 국정감사 현안업무 처리 등의 사유로 공무국외여행 심사결과 부결(2회)됨에 따라 제4기 위원장 국외출장 1회만 추진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1,200	388	811	67.6%	관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위원회 차량은 2023년 신차로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점검 및 수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집행잔액율이 높았으나, 향후 사용기간 증가에 따라 점차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국내여비	35,000	13,427	21,572	61.6%	위원회 관용차 사용, 근거리 출장횟수가 높은 점 등으로 인해 국내여비 집행률 저조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27,100	19,220	7,879	29.1%	정기회 개최시 위원 결석으로 인한 참석수당 지출 감소, 대면에서 서면회의 전환에 따른 비용(참석수당, 운영비) 절감 등으로 집행액 감소
시민인권침해구제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29,940	22,091	7,848	26.2%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 최근 3년간 접수된 사건들이 유형별로 정형화되어 있고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별도의 시민인권배심회의 상정 요청이 발생하지 않아 예산 미집행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사무관리비	112,600	13,580	99,019	87.9%	(인권 강사 양성) 국가인권위에서 검증된 인권교육 전문강사나 민간의 전문강사를 활용으로 예산 절감 (인권교육콘텐츠개발)신규콘텐츠를 개발하는 대신 타기관 공동활용콘텐츠를 우리시에 맞게 재가공하여 도입함에 따라 예산절감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사무관리비	97,200	69,200	28,000	28.8%	시민인권보호관의 직접 과제 수행범위를 확대하고 용역과업을 최소화하면서 용역비 절감에 따라 집행액 감소

-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불용처리 규모의 대소를 떠나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을 저해하므로, 위원회는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는 다음 연도 예산 편성시 효율적인 예산배분을 위한 적정 규모로 예산 조정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1) “현장민원 내지역지킴이 운영” 사업

- “현장민원 내지역지킴이 운영” 사업은 25개 자치구 주민으로 구성된 ‘내 지역 지킴이’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활동 물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천만원을 편성하여 1천 7백만원(불용률 28.3%)을 불용처리 하였음.

〈 “현장민원 내지역지킴이 운영” 사업 집행현황 〉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현장민원 내지역지킴이 운영	60,000	42,998	17,000	28.3%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0,000	42,998	17,000	28.3%

- “현장민원 내지역지킴이 운영” 사업 예산은 자치구 예산(5:5)과 매칭하여 지원하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최근 지속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5회계연도의 경우 성동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등 8개 자치구에서 구비를 미편성하여 시비보조금 중 28.3%를 불용처리 했음.
- 이는, 자치구로 교부하는 보조금은 집행가능성 및 준비상태를 고려하여 시비를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협의와 사업계획 및 부정확한 수요예측으로 예산집행 효율성이 저하됐을뿐 아니라 위원회의 일방적 사업추진으로, 각 자치구의 상황과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자치구에서 관련 예산을 미편성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각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편성된 예산을 불용처리 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25년 ‘내 지역 지킴이 운영비(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자치구 교부 및 집행 현황 〉

(단위 : 원)

사업명	자치구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내 지역 지킴이 운영비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종로구	2,200,000	2,055,960	144,040	
	중구	2,400,000	2,400,000	-	
	용산구	2,500,000	2,500,000	-	
	성동구	-	-	-	
	광진구	1,200,000	1,200,000	-	
	동대문구	2,100,000	2,100,000	-	
	중랑구	2,300,000	2,300,000	-	
	성북구	-	-	-	
	강북구	2,500,000	2,500,000		
	도봉구	-	-	-	
	노원구	-	-	-	
	은평구	2,000,000	2,000,000	-	
	서대문구	-	-	-	
	마포구	2,400,000	2,400,000	-	
	양천구	2,600,000	2,598,010	1,990	
	강서구	3,500,000	3,500,000	-	
	구로구	7,900,000	7,900,000	-	
	금천구	1,200,000	1,200,000	-	
	영등포구	2,270,000	2,270,000	-	
	동작구	2,400,000	2,400,000	-	
	관악구	928,000	928,000	-	
	서초구	-	-	-	
	강남구	-	-	-	
	송파구	-	-	-	
	강동구	2,600,000	2,589,000	11,000	
합 계		42,998,000	42,840,970	157,030	

2) “국제 옴부즈만과의 교류협력 활성화” 사업

- 국제 옴부즈만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통한 위원회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세계옴부즈만협회(IOI) 및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주요행사(총회, 콘퍼런스 등) 참석, 국제협회 연회비 납부 및 정보교류를 위해 편성된 사업비 중 ‘사무관리비’ 28.2%(98만원)와 ‘국외업무여비’ 67.3%(672만원)를 불용처리 하고 있음.

〈 최근 2년간 ‘국제 옴부즈만과의 교류협력 활성화’ 예산 및 집행 현황 〉

(단위 : 천원)

회계연도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내역	
2025	합 계	17,550	9,737		
	국외업무여비	10,000	3,272	◦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총회 및 국제 워크숍 참석(중국, 9월)	3,272
	사무관리비	3,500	2,515	◦ 공무국외출장 통역비 지급	1,315
				◦ 위원회 연례보고서 번역비 지급	1,200
	국제부담금	4,050	3,950	◦ 세계옴부즈만협회(IOI) 및 아시아 옴부즈만협회(AOA) 연회비 납부	3,950
2024	합 계	20,984	19,152		
	국외업무여비	8,860	8,849	◦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총회 및 콘퍼런스 참석(네덜란드, 5월)	8,158
				◦ 국제 옴부즈만 정상회담 참석(홍콩, 12월)	691
	사무관리비	5,040	5,022	◦ 공무국외출장 통역비 지급(2회)	3,320
				◦ 정상회담 발표자료 번역·감수비 지급	630
				◦ 위원회 연례보고서 번역비 지급	1,072
	국제부담금	7,084	5,281	◦ 세계옴부즈만협회(IOI) 및 아시아 옴부즈만협회(AOA) 연회비 납부	1,867
				◦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콘퍼런스 등록비 지급	3,414

- “국제 옴부즈만과의 교류협력 활성화” 중 ‘사무관리비’와 ‘국외업무여비’의 진행잔액은 총 3건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에서 2건이 부결되어 공무국외출장이 1건으로 감소함에 따라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2025년 공무국외출장 심사 결과 〉

연번	출장기간	출장국가	출장목적	심사결과	부결사유
1	'25.5.10.~5.17.	모로코	2025 세계옴부즈만협회 이사회 참석	부결	3기 위원장 잔여임기 문제 (’25.5.25. 임기만료)
2	'25.9.8.~9.12.	중국	제18차 아시아옴부즈만협회 총회 및 국제 워크숍 참석	가결	-
3	'25.10.13.~10.17.	몰타	국제 옴부즈만 컨퍼런스 참석	부결	국정감사 등 현안업무 처리

- ▶ 2024년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원거리 지역(네덜란드, 2인) 출장으로 1회 출장 시 8,158천원의 국외업무여비가 집행되었으나, 2025년에는 근거리 지역(중국, 3인) 출장으로 상대적으로 소요경비가 감소하여 예산 집행액 축소
- 다만, 공무국외출장 심사 부결사유를 살펴보면, 위원장의 임기만료 임박과 국정감사 등 현안업무 처리 등의 사유로 부결되었는데, 해당일정은 시기를 사전에 특정할 수 있어 예산편성시 예측가능한 상황이었으며, 2025년도 출장지는 중국으로, 2024년도의 네델란드에 비해 근거리 지역으로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 조례」 등을 확인할 경우 국가별 항공권, 숙박비, 체류비 등의 감소를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해마다 같은 규모의 ‘국외업무여비’를 편성하고 있는 위원회가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철저하고 명확한 기준으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 서울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매년 2회의상의 공무국외를 계획하고 있으나, 국가간, 도시간 회의 성격 및 참석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 ‘국내여비’는 각각 67.6%(81만원), 61.6%(2천 150만원)의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음.

〈 최근3년간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집행내역 〉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불 용 사 유
2025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1,200	388	811	67.6%	관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위원회 차량은 2023년 신차로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점검 및 수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집행잔액율이 높았으나, 향후 사용 기간 증가에 따라 점차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국내여비	35,000	13,427	21,572	61.6%	위원회 관용차 사용, 근거리 출장횟수가 높은 점 등으로 인해 국내여비 집행을 저조
2024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900	20	879	97.7%	관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위원회 차량은 2023년 신차로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점검 및 수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예산집행 부진
		국내여비	27,601	13,245	14,355	52.0%	부서 청사 이전(24년 6월), 조직개편(24년 7월)에 따른 출장 감소 및 위원회 관용차(23.8월 구입) 사용 등으로 인해 국내여비 집행을 저조
2023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1,200	8	1,192	99.4%	부서 신차구입에 따른 차량정비유지비, 차량소모 품비 지출 감소로 인한 예산집행 부진
		국내여비	12,530	8,931	3,598	28.7%	예산편성 당시 고려한 관외출장 여비가 미집행되어 예산집행 저조

-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의 경우 관용차량 교체에 따른 차량정비유지비 및 차량소모품 지출이 감소했으나, 비상시(차량긴급수리 등)를 대비해 100만원 내외의 예산을 매년 편성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 ‘국내여비’의 경우 매년 불용률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예산액을 증액하고 있는바, 이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실제 출장 수요와 집행 규모에 대한 분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전년도 예산을 답습하여 편성한 결과로 보임.
- 특히, 분기별 집행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하반기 집행 가능성이 낮은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적기에 감액·조정함으로써 재원을 보다 필요한 사업에 재분배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사업

-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사업은 시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직원 대상 교육을 통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것으로, ‘사무관리비’ 1억 1천 2백만원을 편성하여 9천 9백만원(불용률 87.9%)을 불용처리 하였음.

〈 최근2년간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사업 집행현황 〉

(단위: 천원 / %)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24년	'25년	'24년	'25년	'24년	'25년	'24년	'25년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62,460	112,600	56,456	13,580	6,004	99,019	9.6	87.9
인권아카데미 운영	11,560	10,800	9,513	6,914	2,046	3,885	17.7	35.9
인권강사 양성	-	50,900	-	-	-	50,900	-	100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50,900	50,900	46,943	6,666	3,958	44,234	7.7	86.9

〈 2025년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사업 상세내역〉

〈단위 : 천원〉

연도	편성액	편성내역	집행액	집행내역
2025	112,600	○서울인권아카데미 운영 : 10,800	13,580	○서울인권아카데미 운영 : 6,914 - 강사비 : 4,524 - 교육운영비 : 1,632 - 모니터링비 : 758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 48,000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 6,666 - 콘텐츠 재가공비 : 6,666 (썸네일 18식, ytt자막 15차시, 안내문 삽입 18식, 덕테이션 15차시)
		○인권강사양성 : 48,000		○인권강사양성 : 0 - 사업 미실시
		○선정위원회 운영 : 2,800		○선정위원회 운영 : 0 - 선정위원회 미운영
		○자문회의 운영 : 3,000		○자문회의 운영 : 0 - 자문회의 미운영

※ 24년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신규제작 용역 39,372천원 / 재가공비 7,370천원)

- 재가공 내역(썸네일 8식, ytt자막 18차시, 안내문 삽입 8식, 덕테이션 9차시)

-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의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해당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불용률이 높는데, 이에 대해 위원회는 ‘인권강사 양성’의 경우 국가인권위 및 민간 전문강사를 활용하고,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의 경우 타기관 콘텐츠를 서울시에 맞게 재가공하여 도입하여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설명하는 등 예산의 원칙을 위배한 심각성과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는 예산을 절감한 것이 아닌 공공 행정과 예산 제도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로, 불필요한 예산의 편성은 시급한 사업에 예산 편성저해, 엄밀한 수요 예측과 철저한 사업 계획의 실패 등을 방증하는바, 이는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약화시킬 수 있는 사안으로 사료됨.
- ‘인권강사 양성’ 사업의 경우 5천만원 편성했으나, 100% 전액 불용처리한 건으로, 동 사업의 목적·취지는 외부 전문가 의존을 줄이고, 서울시 자체 교육역량을 강화하여 인권교육의 지속성 확보, 시민 대상 인권교육을 확대 하기 위한 것이 었으나, 위원회는 타 기관에 의존한 사업을 추진 했는바, 위원회가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전문인력 확보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됨.
-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은 86.9%(4천 4백만원)를 불용처리했고, 불용사유는 신규콘텐츠 개발 대신 타기관 공동활용콘텐츠를 활용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사업명 자체가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로 서울시와 시민에게 적합하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편성한 예산을 타기관의 콘텐츠 임차에 집행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불용처리 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 2022년~2025년 콘텐츠 개발 현황 〉

연도	예산	주제	제작방식	제작 방향
2025	50,900	-	-	-
2024	40,630	노인인권	○용역사업	○ 노인 폭력·학대, 소외 등 ○ 시의성있는 주제와 흥미 유발
2023	49,000	정보와 인권	○용역사업	○ 직원과 대시민용 영상 콘텐츠 ○ 시의성있는 주제와 흥미 유발
2022	52,400	감정노동종사자 인권침해	○용역사업	○ 직원교육과 대시민용 영상 ○ 평면적 구성이 아닌 다적도 구성

5) 인권담당관 ‘사무관리비’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각각 29.1%(780만원), 26.2%(780만원), 28.8%(2천 8백만원)를 불용처리했음.

〈 인권담당관 ‘사무관리비’ 불용액 현황 〉

(단위 : 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불 용 사 유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27,100	19,220	7,879	29.1%	정기회 개최시 위원 결석으로 인한 참석수당 지출 감소, 대면에서 서면회의 전환에 따른 비용(참석수당, 운영비) 절감 등으로 집행액 감소
시민인권침해구 제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29,940	22,091	7,848	26.2%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 최근 3년간 접수된 사건들이 유형별로 정형화되어 있고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별도의 시민인권배심회의 상정 요청이 발생하지 않아 예산 미집행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사무관리비	97,200	69,200	28,000	28.8%	시민인권보호관의 직접 과제 수행범위를 확대하고 용역과업을 최소화하면서 용역비 절감에 따라 집행액 감소

- 위원회의 불용사유는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사업의 경우 소위원회 개최 감소에 따른 운영비 축소와 대면회의에서 서면회의로 전환되어 집행액이 감소하였고,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의 경우 최근 3년간 인권침해 사건 접수가 감소하여 시민인권배심회의의 미개최 등으로 불용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집행현황 〉 (단위: 천원 / %)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24년	'25년	'24년	'25년	'24년	'25년	'24년	'25년
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 운영	29,940	29,940	25,192	22,092	4,748	7,848	15.9	26.2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회의 운영	26,260	26,260	21,512	22,092	4,748	4,168	18.1	15.9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	3,680	3,680	3,680	-	-	3,680	-	100

- 특히, 인권담당관은 인권현안 및 취약분야 인권정책 발굴을 위한 인권실태 조사를 위해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의 ‘사무관리비’를 집행하고 있으며, 2025년도 예산편성시에도 명확한 과제설정과 예산 산출을 통해 「2025년 인권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추진 의지를 반영하여 9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8.8%(불용액 2천 8백만원)를 미집행하는 등 인권담당관이 집행하는 ‘사무관리비’ 전반에서 20%이상의 불용이 발생하고 있음.
- ‘사무관리비’는 일반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일상적·반복적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행정 기능 유지에 필요한 ‘운영비’ 성격인 항목으로 사무관리비의 불용률이 높다는 것은 사업 또는 업무 추진이 부진했을 가능성, 집행 계획 및 예산 관리가 미흡했을 가능성, 사업 수행의 차질 등을 방증하는바, 위원회의 사업성과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5년 인권 실태조사 추진계획>

인권 취약분야 및 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인권증진 정책 개발 및 인권보호 대책 마련에 활용하고자 함

I

추진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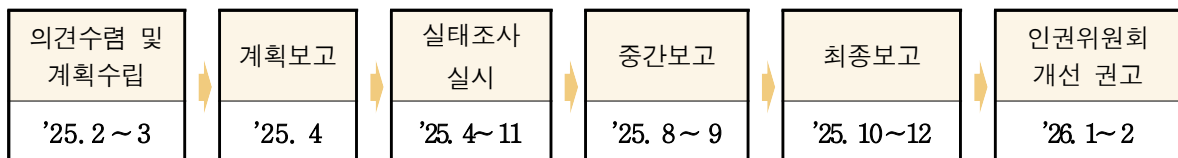
□ 실태조사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7조 4항
- 추진기간 : '25년 2월~12월
- 조사대상 : 인권 정책개선 권고를 위해 인권 실태파악이 필요한 분야
- 조사내용 : 인권 취약분야 및 사각지대의 실태 및 문제점 도출
- 조사건수 : 2건(연간/인권보호관 1인 1건)
- 예 산 액 : 금97,200천원(조사비 90,000천원/운영비 7,200천원)
 - 조사비 : 2건 / 90,000천원
 - 운영비 : 2건 × 1,800천원 = 7,200천원(※ 자문회의 참석수당 등)

□ 수행방법 및 추진절차

- 수행방법 : 직접수행 + 부분용역
 - 직접수행 : 문헌조사, 설문조사 설계, 면접조사, 조사결과 분석, 정책개선 방안 도출 등
 - 부분용역: 설문조사, 면접조사 지원, 설문조사 통계처리 등

○ 추진절차



II

추진과제

□ 과제별 조사범위 및 대상

연번	과제명	조사범위 및 대상
1	기후위기로 인한 취약계층 노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생물학적·사회적·주거환경 취약 특성 등이 각각 1개 이상 복합적인 만 60세 이상 고령자
2	서울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서울 거주 만 24세 이하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돌봄 대상자(부모, 조부모 등),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관련 전문가·관계자 등

※ 2025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발췌

라. 포괄적 내용의 사업 구분 및 예산 편성 지양

-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위원회의 추진 사업명이 “위원회 직무 역량 강화 및 홍보 확대” 등과 같이 포괄적으로 설정하고 상이한 성격의 여러 활동을 단일 사업으로 통합하는 것은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 이는 다른 세부 사업들이 하나의 사업 단위로 묶여 있어 세부 사업간 연관성과 단위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고, 이에 따라 예산의 사용 목적과 집행 결과를 이해하기 어려우며,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저하시켜 예산의 불용률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위원회는 향후 예산 편성 및 결산 시에는 사업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통일되고 일관된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예산 집행과정을 수시로 점검하여, 예산이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 노력도 요망된다고 하겠음.

전 문 위 원	정 찬 일	입법조사관	김 원 진
---------	-------	-------	-------